



모바일 홈페이지



2023년 5월 개정

교보 하이브리드 연금보험

23.05 (무배당, 거치형)[B]

이 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상담안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교보생명 홈페이지(www.kyobo.com) 또는 교보생명 방카슈랑스 콜센터(1588-1099)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민원센터(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과 불만 또는 건의사항 접수

교보생명 방카슈랑스 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588-1099**

※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도 교보생명 방카슈랑스 콜센터 (월 ~ 금, 09시 ~ 18시) 또는 고객 PLAZA(월 ~ 금, 09시 ~ 15시 30분)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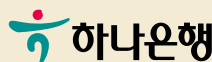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도록 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홈페이지 www.fss.or.kr



교보생명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
교보방카슈랑스 콜센터 : 1588-1099
www.kyobo.com

판매사



2003091001

보험사



KYOBO 교보생명

교보하이브리드연금보험 23.05 (무배당, 거치형)[B] 상품특징

가입 후 5년간 확정이율 적용하는 연금보험

- 가입 후 시중 금리에 관계없이 확정이율 적용
- 5년 이후 시중금리에 따라 변동되는 공시이율 적용

장기유지보너스 혜택 제공

5년 후부터 10년까지 매년 계약자적립액에
장기유지보너스 적립

최대 85세까지 가입, 18세 이상이면 연금수령 가능

- 18세부터 연금개시가 가능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필요시점에 언제든지 연금으로 수령가능
- 가입나이 : 0세(가족사랑형 20세) ~ 최대 85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18세 ~ 최대 90세

세대를 이어주는 연금 [2종(가족사랑형)에 限]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를 위한 연금보험,
내가 없을 때는 배우자, (손)자녀 등
사랑하는 가족에게 연금 지급

탄력적인 자금활용

중도인출 및 추가납입 기능

LTC(장기간병상태)보장 가능

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으로 중증치매 등
장기간병의 어려움에 대비

실버케어플러스[플러스] 제공

일시납 1억원 이상 가입자에게
교보생명만의 특별한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노후계획에 맞게 나만의 맞춤 연금설계

연금개시 이후의 자금 상황에 맞춰 연금액과 연금지급
개시시점 조정 가능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요약된 자료이므로 이 상품의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편리한 기능! 다양한 혜택!

매년 더 커지는 연금혜택! 장기유지보너스

장기유지보너스 제도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5년~10년이 되는
매년 계약해당일 전일의 기본 계약자적립액에 가산

장기유지보너스란?

장기유지보너스 = 매년 연계약해당일 전일의 기본 계약자적립액 x 1.0%

구분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장기유지보너스
5년 ~ 10년이 되는 시점	계약일부터 5년~10년이 되는 매년 계약해당일	매년 연계약해당일 전일의 기본계약자적립액 x 1.0%

※ 계약일부터 5년 미만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장기유지보너스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추가납입보험료에 따른 계약자적립액의 경우에는 장기유지보너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

장기간병연금전환특약이란?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하는 연금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존연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 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 연금액 지급
장기간병 연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연금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 되고, 그 이후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생존 연금액의 1배를 지급

※ 장기간병연금은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의 두 가지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한하여 10회를 최고 한도로 하여 지급하며, 전환일
이후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연금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일부터 지급합니다.

※ 본 특약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자의 별도신청과 회사의 승낙에 의하여
부가하는 특약이며, 신청 당시 본 특약의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본 자료는 요약자료이므로 해당 상품의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전환특약Ⅲ

주계약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일부터 5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아래에서 정한 계약을 대상으로 함

- ① 연금지급개시가 도래하지 않은 계약(- 전환대상 : 전환 전 계약의 주계약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② 연금지급개시가 도래한 계약으로 노후자금 전부에 대하여 연금전환을 신청한 계약(- 전환대상 : 주계약 피보험자 본인)
- 계약자적립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 1일의 공시이율을 당월의 마지막날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계약해당일 이후 경과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복리 1.25%,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 복리 1.0%,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 복리 0.5%로 합니다.
- 전환신청나이 : 피보험자 나이 40세 ~ 85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피보험자 나이 45세 ~ 90세
 - ※ 연금전환 신청 당시 판매중인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의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내용을 적용
- 연금지급형태 :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형, 상속연금형 중 선택(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에는 해지 불가)
- 계약자적립액 인출
 - 가능기간 : 계약일부터 1개월~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단, 연금형태가 상속 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에도 가능)
 - 인출횟수 : 연 12회
 - 인출가능금액
 -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 1회당 해약환급금의 50%이내
 -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 상속연금형에 해당하는 연금개시시점 적립액의 50%이내
 - 인출수수료 :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연4회 면제)
 - ※ 계약자적립액이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자 적립액의 인출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서 인출가능합니다.

노후자금 선택제도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 중 0% ~ 50%까지 100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

노후자금 활용 방법

· 필요시점에 일시금으로 수령

· 노후자금 부분 인출

- 연금지급 개시 후 노후자금 신청 전에 연 12회 인출 가능

- 인출총한도 : 노후자금의 50%이내

- 인출수수료 : 인출금액의 0.2%(2,000원 한도)(다만, 연 4회 수수료 면제)

- 노후자금 인출시 인출 금액만큼 추가납입 가능

※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소정의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이 공제됩니다.

· 잔여노후자금 전부에 대해 연금수령(연금전환특약Ⅲ 전환시)

연금액 조정제도

연금지급 개시 전에 종신연금형 중 개인 정액형의 보증지급기간 동안의 연금액을 총액 (금액) 조정과 조정된 연금액의 지급기간을 신청하는 제도(단, 기대여명보증형은 제외)

- 조정률 : 25%, 50%, 75% 중 선택

- 지급기간 : 3년 ~ 10년(다만, 10년보증형의 경우 3년 ~ 5년)

연금분할제도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연금재원)을 두 가지 연금형태로 선택하여
고객의 다양한 연금수령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연금지급 서비스 제도(5% 단위)

보험종류	· 1종(기본연금형) · 2종(가족사랑형)
연금지급 형태	· 1종(기본연금형) - 종신연금형 : 개인/부부, 정액형(10년, 20년, 30년, 100세, 기대여명보증), 계층형(10년, 20년보증 / 5%, 10%) - 확정기간연금형 (5년/10년/15년/20년/25년/30년) - 상속연금형 · 2종(가족사랑형) - 종신연금형 : 개인, 종신연금 10년보증 + 가족사랑연금 20년, 개인, 종신연금 20년보증 + 가족사랑연금 20년, 개인, 종신연금 30년보증 + 가족사랑연금 20년, 개인, 종신연금 100세보증 + 가족사랑연금 20년 - 확정기간연금형 (5년/10년/15년/20년/25년/30년) - 상속연금형 ※ 연금분할제도(복수 연금) 선택 가능(5% 단위) ※ 노후자금 선택 가능(0%~50%, 100만원 단위) ※ 가입시 종신연금 개인 정액형 10년/20년/30년/100세/기대여명보증형으로 가입 후후 계약변경을 통해 연금지급 개시 전 연금형태 변경 가능 ※ 종신연금형 100세 보증[(100 - 연금지급개시나이 + 1)회 보증] 및 종신연금형 기대여명보증은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함 ※ 종신연금형 기대여명보증은 연금개시시점의 피보험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산출된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기대여명보증형 선택이 불가함
가입나이	· 1종 : 0세(태아제외) ~ 최대(연금지급개시나이 - 5세) · 2종 : 20세 ~ 최대(연금지급개시나이 - 5세) ※ 종신연금형(부부형)의 최저 가입나이는 주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 3세로 함
연금지급 개시나이	· 1종(기본연금형) 18세 ~ 90세 [종신연금형(부부형)에서 주피보험자가 남자일 경우 최저 연금지급개시나이는 23세이며, 여자일 경우 최저 연금지급개시나이는 20세임] · 2종(가족사랑형) 35세 ~ 90세
기본보험료	1,000만원 이상
추가납입 보험료	· 총 한도 : 일시납 기본보험료의 200% · 가능기간 : 계약 성립 5년 후부터(연금지급개시나이 - 2)세의 계약해당일까지 ·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인출금액의 누계만큼 추가납입가능
보험 기간	· 연금지급개시 전 보험기간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지급개시 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로부터 종신까지(다만, 확정기간 연금형의 경우 최종 연금 지급일까지) ※ 두 가지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한 경우 그 중 가장 긴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을 이 보험의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으로 함
피보험자 변경	· 대상계약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계약 ①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가 법인 ② 피보험자가 해당 법인의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 ③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 ※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주기	일시납
계약자 적립액의 인출	·인출가능기간 계약일 1개월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단,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인출 가능)
	·인출횟수: 연 12회
	·가능금액 - 연금지급 개시 전: 1회당 해약환급금의 50%이내(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차감한 금액 기준)
	- 연금지급 개시 후: 상속연금형에 해당하는 연금지급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의 50% 이내
	·인출 수수료: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작은 금액(연 4회 면제)
	·인출 후 최저 계약자적립액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10% 이상 다만, 보험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서 인출가능합니다.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일시납 1억원,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단위: 만원)

경과 기간	총 납입보험료	가입 후 5년 미만 확정이율 연복리 3.60%					
		가입 후 5년 이후 2023.4월 공시이율 연복리 3.00%가정		가입 후 5년 이후 평균공시이율 2.25% 가정		가입 후 5년 이후 최저보증이율 가정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환급금	환급률
3개월	10,000	9,928	99.3%	9,928	99.3%	9,928	99.3%
6개월	10,000	9,979	99.8%	9,979	99.8%	9,979	99.8%
9개월	10,000	10,031	100.3%	10,031	100.3%	10,031	100.3%
1년	10,000	10,083	100.8%	10,083	100.8%	10,083	100.8%
2년	10,000	10,398	104.0%	10,398	104.0%	10,398	104.0%
3년	10,000	10,760	107.6%	10,760	107.6%	10,760	107.6%
5년	10,000	11,638	116.4%	11,638	116.4%	11,638	116.4%
7년	10,000	12,565	125.7%	12,383	123.8%	12,082	120.8%
10년	10,000	14,091	140.9%	13,584	135.8%	12,772	127.7%
15년	10,000	16,267	162.7%	15,116	151.2%	13,031	130.3%
20년	10,000	18,790	187.9%	16,828	168.3%	13,296	133.0%
연금개시시점	10,000	18,790	187.9%	16,828	168.3%	13,296	133.0%

- ※ 주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연 복리 1.0%, 10년 이상인 경우 연 복리 0.5%로 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이란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시점의 이율 (연복리 2.25%)을 말합니다.
- ※ 해당 해약환급금 예시금액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확정 이율 연 복리 3.60%, 경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 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현재 공시이율(2023년 4월 연 복리 3.00%)을 기준으 로 계산한 금액이며, 경과기간 5년 이상 보험기간 중 공시이율이 변동되는 경우에 는 실제 해약환급금이 위의 예시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위의 예시된 해약환급금 중 5년~10년이 되는 시점의 해약환급금은 계약해당일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내용
재해장해 급여금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1종(기본연금형) 및 2종(가족사랑형)에서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전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은 기본계약자적립액, 추가계약자적립액, 보너스적립액 및 장기유지보너스 계약자적립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일 기준의 해약환급금에 장기유지보너스(계약해당일)를 포함한 금액이며, 계약 해당일(5년~10년이 되는 시점) 경과 이전에 해지할 경우 해당 시점에 포함된 장기 유지보너스는 제외됩니다. 단, 장기유지보너스는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유효한 계약의 기본계약자적립액에 대해 발생하며, 추가계약자적립액에 대해서는 발생 하지 않습니다.
- ※ 이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해당 해약환급금 예시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지급 예시

기준 : 일시납 1억원, 남자 40세, 60세 연금개시 (단위 : 만원)

구분			가입 후 5년 미만 확정이율 연복리 3.60%			
			5년이후 최저보증 이율 적용	5년이후 평균공시이율 2.25%가정	5년이후 2023년 4월공시이율 연복리 3.00%적용	
기본계약자적립액			12,534	15,865	17,716	
장기유지보너스			761	962	1,074	
합계			13,296	16,828	18,790	
종신 연금 (개인형) (1종)	정액 형	10년보증		425	709	880
		20년보증		418	698	866
		30년보증		398	669	833
		100세 보증		348	607	766
		기대여명 보증		414	691	859
	5% 체 증	10년 보증	1차년	291	494	618
			10차년 이후	452	767	959
		20년 보증	1차년	286	486	608
			10차년 이후	445	754	943
	10% 체 증	10년 보증	1차년	201	345	434
			10차년 이후	474	814	1,025
		20년 보증	1차년	197	339	426
			10차년 이후	465	799	1,006
종신 연금 (부부형) (1종)	정액 형	10년보증		351	612	772
		20년보증		351	612	772
		30년보증		350	610	770
		100세 보증		336	593	751
		기대여명 보증		350	612	772
	5% 체 증	10년 보증	1차년	238	422	536
			10차년 이후	369	655	832
		20년 보증	1차년	238	422	536
			10차년 이후	369	654	832
	10% 체 증	10년 보증	1차년	162	292	373
			10차년 이후	383	689	881
		20년 보증	1차년	162	292	373
			10차년 이후	383	689	881
2종 (가족사랑형)	종신연금 10년보증 +가족사랑연금 20년		279	531	688	
	종신연금 10년보증 +가족사랑연금 20년		276	525	680	
	종신연금 10년보증 +가족사랑연금 20년		268	508	659	
	종신연금 10년보증 +가족사랑연금 20년		244	472	616	
확정연금형 (1종, 2종)	5년확정		2,672	3,499	3,963	
	10년확정		1,352	1,847	2,128	
	15년확정		913	1,298	1,520	
	20년확정		693	1,025	1,220	
	25년확정		561	863	1,042	
	30년확정		473	756	926	
상속연금형 (1종, 2종)	상속연금		65	368	544	
	상속자금		13,230	16,458	18,243	

-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은 기본계약자적립액, 추가계약자적립액 및 보너스적립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계약체결할 때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개인형, 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 100세, 기대여명 보증 정액형)으로 가입되며, 연금지급 개시전에 연금지급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종(가족사랑형)의 경우 기대여명보증형 선택 불가합니다.
- ※ 연금지급개시나이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연금지급개시나이의 기대여명을 적용 하므로 기대여명 보증형의 기대여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종신연금형 100세 보증(100- 연금지급개시나이+1)회 보증] 및 종신연금형 기대여명보증은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종신연금형 기대여명보증은 연금개시시점의 피보험자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산출된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기대여명보증형 선택이 불가합니다.
- ※ 1종(기본연금형) 종신연금형의 체증형에 적용하는 체증률(5%, 10%)은 최초 연금 액 계산할 때 적용하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연금지급개시 이후의 공시이율이 동일할 경우, 전년도 연금액 대비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에 해당하는 연금액이 지급되며 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10차년도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연금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종신연금형은 피보험자가 연금지급 개시 후 보증지급기간[10년(10회), 20년(20회), 30년(30회), 100세 또는 기대여명]안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까지의 연금지급을 보증 지급해 드립니다.
-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후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종신연금형 중 2종(가족사랑형)상품에 한해 추가적으로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 한 연금액을 사망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20년(확정기간)동안 선택한 지급주기에 따라 지급하거나, 20년 동안 지급될 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및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안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기간 및 잔여 확정연금 지급기간 동안 미지급된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일에 지급하여 드리며, 일시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되는 연금액 을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종신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및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안에 보험수익자 가 신청한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 또는 잔여 연금지급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연 단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 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연 회)
-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과 계약자적립액을 기준 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연금지급개시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않습니다.
- ※ 종신연금형(부부형)은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우 위의 연금액을 지급하며, 주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에는 주피보험자가 생존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 ※ 상속연금형 월 수령 중 사망할 경우 사망시 수익자에게 연 연금액 중 미지급된 연금액을 상속자금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 위의 예시금액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공제하고,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확정이율 연복리 3.60%, 경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보증이율, 평균공시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이율, 현재 공시 이율(2023년 4월 연복리 3.00%)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공시이율이 변동하 는 경우 연금액도 변동됩니다.
- ※ 평균공시이율이란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 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 공시이율을 말하며,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적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은 연복리 2.25%입니다.
- ※ 최저보증이율은 공시이율의 최저한도를 말하며, 보험가입 후 5년 이상 10년 미만 인 경우 연복리 1.0%, 10년 이상 연복리 0.5%입니다.
- ※ 해당 연금지급 예시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할 때 알아두실 사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설계사(방카슈랑스판매인)입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교보생명으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않은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할 때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에 기재), 청약서 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이 제한되었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 회사, 주권상장법인, 단체보험 계약자 및 보험설계사(방카슈랑스 판매인 포함) 등을 포함하여「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함.

판매담당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품질보증제도 운영)

보험계약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시는 경우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은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에서 알려드립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및 위험 직종 등의 경우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 등이 안내되어 있는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보험계약 체결 전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계약의 보험료 산출할 때 적용한 이율은 2.0%입니다.

※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적용기초율은 이 계약의 상품요약서에서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적용 이율에 관한 안내

가입하시는 저축성보험은 보험가입 후 경과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확정이율을, 경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후에는 공시이율이 적용됩니다. 공시이율은 객관 적인 외부지표금리⁽¹⁾와 운용자산이익률⁽²⁾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이익 등을 고려한 조정율을 가감하여 매월 회사가 결정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1)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2)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2개월간의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배당이 없는 무배당 상품입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상품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위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또는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생명 홈페이지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kyobo.com
※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비교공시 : www.klia.or.kr

본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광고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